

【 5 】 양주군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출년월일 : 1998. 5. 7.

제출자 : 양주군수

□ 제안이유

- 양주군행정정보공개조례를 제정('93. 8. 6)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과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98.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소관사무에 관하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등에 대하여 동법령에 맞도록 현행 조례를 개정하는 한편,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가. 조례제명 "양주군행정정보공개조례"를 "양주군정보공개조례"로 변경함.
- 나. 정보공개 청구인의 범위를 종전에는 양주군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하고 있는 자 및 양주군에 사업소 또는 사무소를 두고 있는 개인·법인 및 단체로 하던 것을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개인·법인 및 단체 또는 외국인으로서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외국법인 및 단체로 청구인의 범위를 확대함.(안 제4조)

- 다. 공개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개청구된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 라. 정보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종전에는 “양주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 별표 1 제증명등수수료요율표”에 의하여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 의한 수수료금액으로 정수함. (안 제10조)
- 마. 청구인이 집행기관으로부터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는 통지를 받고 집행기관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할 경우, 종전에는 2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하여야 하였으나, 앞으로는 결과통지 기간을 7일 이내로 단축함. (안 제11조)
- 바. 정보공개심의회의 위원을 현행 9인이내에서 7인으로 하였으며, 공무원3인, 군의회의원2인, 학계등 전문성을 가진 2인으로 하며, 그 중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1인은 군수가 지명 또는 위촉 함.(안 제13조)
- 사.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 즉 일반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나 이미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시간이 걸리지 아니하는 정보등은 심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즉시 공개함.(안 제14조의 2)
- 아.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과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을 준용함. (안 제19조)

양주군 조례 제 호

양주군 행정정보공개조례중 개정조례안

양주군 행정정보공개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명 “양주군 행정정보공개조례”를 “양주군 정보공개조례”로 한다.

제1조(목적) 중 “행정정보 공개에”를 “정보 공개에”로 한다.

제2조(정의) 제1호 중 ““행정정보””를 ““정보””로 하고, 제2호 중 “군수 및 군산하
직속기관, 사업소의 장”을 “군수와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으로 하며, 제3
호 중 “행정정보를”을 “정보를”로 하고, “사본을”을 “사본 또는 복제물을”로 한다.

제4조(공개청구권자)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공개청구권자) 이 조례에 의한 정보공개청구인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하고 있는 개인·법인 및 단체
2. 외국인으로서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자 또는 국내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외국법인 및 단체

제5조(공개대상정보) 제1항 제2호 중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출생지·사상·종교·경력·신체적특성·재산상태등이 공개됨으로써 개인
의 기본적인 권리와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

동조 동항 제2호 나목 중 “개인,”을 “개인·”으로 하며, 제3호 가목 중 “적정한 의사
결정”을 “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하고, 나목 중 “미확정 계획, 입찰예정가격, 시험
문제, 교섭, 쟁송, 인사”를 “미확정 계획·입찰예정가격·시험문제·교섭·쟁송·
인사”로 하며, 제2항 중 “각호의”를 “각호의 1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제6조(공개의 청구방법) 제1호 중 “이름 및 주소”를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로 한다.

제8조(공개여부 결정)중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집행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기간내에 해당정보에 대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5일의 범위내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이유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④집행기관은 공개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세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개청구된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비용부담) 제1항중 “정보공개에”를 “정보공개 및 우송등에”로 하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비용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 의한 수수료금액으로 징수한다.

제11조(이의신청)중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을 신설한다.

②집행기관은 제1항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을 경우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없이 이를 양주군정보공개심의회에 공개의 가부를 심의요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심의요청을 받은 심의회는 심의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해당 정보에 대한 공개의 가부를 심의하여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집행기관은 그 사실을 지체없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정보공개 심의위원회)중 조명 “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정보공개 심의회”로 하고, 제1항중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양주군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심의하거나 자문 등에 응하기 위하여 양주군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로 하고, 제2항중 “위원회”를 “심의회”로 한다.

제13조(조직)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심의회는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되어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위원은 집행기관의 소속위원중에서 3인을 군수가 임명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군수가 지명 또는 위촉한다.

1.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2인
2. 학계등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 2인

동조 제3항중 “위원회”를 “심의회”로 하고, “위원회에서 서로 뽑는다.”를 “군수가 지명 또는 위촉한다.”로 하며, 제5항중 “위원회”를 “심의회”로 하고, 제6항 중 “위원회”를 “심의회”로 하며 “의결한다.”를 “심의한다.”로 한다.

제14조(대외 누설금지)중 “위원회”를 “심의회”로 한다

제14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 2(즉시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절차) ①“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1. 일반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
 2. 이미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시간이 걸리지 아니하는 정보
 3. 기타 집행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 ②제1항의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는 정보공개청구서에 의하여 접수하되, 심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정보공개 목록의 작성)중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집행기관은 청구인의 편의를 위하여 공개대상 목록책자를 발간하여 군 및 읍·면 민원실등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9조(준용)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준용)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과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공개청구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거 청구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양주군행정정보공개조례	양주군정보공개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정에 관한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책임행정의 진작을 통하여 주민의 복지증진과 민주적인 군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경 보 공개에 ----- ----- ----- ----- ----- -----
제2조(정의) (생략)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행정정보”라 함은 집행기관에서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한 문서, 그림, 사진, 필름, 녹음테이프, 녹화테이프, 컴퓨터에 입력된 자료 등으로 관리 보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2. “집행기관”이라 함은 군수 및 군산 하 직속기관, 사업소의장을 말한다. 3. “공개”라 함은 행정정보를 열람에 제공하거나 사본을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1. “정보”----- ----- ----- ----- ----- 2. ----- 군수와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3. ----- 정보를 ----- ----- 사본 또는 복제물을 ----- -----
제4조(공개청구권자) 이 조례에 의한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4조(공개청구권자) 이 조례에 의한 정보공개청구인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양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하고 있는 개인·법인 및 단체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2. 양주군에 사업소 또는 사무소를 두고 있는 개인 및 법인	2. 외국인으로서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자 또는 국내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외국법인 및 단체
3. 집행기관이 행하는 사업으로 청구하는 정보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제5조(공개대상정보) ①(현행과 같음)
제5조(공개대상정보) ①(생략) 1. (생략) 2. (생략) 가. 출생지, 사상, 종교 및 경력 등 공개됨으로써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가. 출생지·사상·종교·경력·신체적특성·재산상태등이 공개됨으로써 개인의 기본적인 권리와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
나. 개인, 단체 및 법인의 거래상 비밀 또는 영업 및 재산에 관계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현저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	나. 개인·----- ----- ----- ----- ----- 3. (현행과 같음)
3. (생략) 가. 집행기관 내부 또는 다른 기관과의 상호간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절정한 의사결정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명백한 것.	가. ----- ----- ----- 합리적인 의사결정-----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나. 미 확정 계획, 입찰 예정 가격, 시험 문제, 교섭, 쟁송, 인사 및 회계 등 공개하는 것이 규정의 적정한 업무집행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나. 미 확정 계획 · 입찰 예정 가격 · 시험 문제 · 교섭 · 쟁송 · 인사 ----- ----- -----
다. (생략)	다. (현행과 같음)
라. (생략)	라. (현행과 같음)
4. (생략)	4. (현행과 같음)
②집행기관은 제1항 각호의 공개할 수 없는 정보와 공개할 수 있는 정보가 합하여 기록되어 있는 경우 이를 합리적으로 분리 가능할 때에는 공개 가능부분에 대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각호의 1에 해당하는 ----- ----- ----- -----
③(생략)	③(현행과 같음)
제6조(공개의 청구방법) (생략)	제6조(공개의 청구방법) (현행과 같음)
1. 청구자의 이름 및 주소(법인 등에 있어서는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의 이름)	1. -- 이름 ·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
2. (생략)	2. (현행과 같음)
3. (생략)	3. (현행과 같음)
제8조(공개여부 결정) ①(생략)	제8조(공개여부 결정) ①(현행과 같음)
②집행기관은 제1항의 기간내에 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청구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연장 통	②집행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기간내에 해당정보에 대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지를 하여야 한다.	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5일의 범위내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이유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생략) 〈신 설〉	③(현행과 같음) ④집행기관은 공개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개청구된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비용부담) ①정보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②제1항의 비용은 "양주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 별표 1 제증명등수수료요율표"중 공부의 등·초본 교부대장 문서 또는 공부 및 공부부본 열람 요액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10조(비용부담) ①정보공개 및 우송 등에 ----- ②제1항의 비용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 의한 수수료금액으로 징수한다.
제11조(이의신청) ①(생략) ②집행기관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에 회부하고 위원회는	제11조(이의신청) ①(현행과 같음) ②집행기관은 제1항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을 경우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이를 양주군정보공개심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접수일로부터 20일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p> <p>〈신 설〉</p>	<p>의회에 공개의 가부를 신의요청하여야 한다.</p> <p>③제2항의 심의요청을 받은 심의회는 심의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해당정보에 대한 공개의 가부를 심의 하여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집행기관은 그 사실을 자체없이 청구 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제12조(정보공개심의위원회) ①집행기관 의 자문에 응하고 제11조 제1항의 규 정에 의하여 접수된 이의신청의 공개 여부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양주군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p> <p>②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 에서 "양주군각종위원회설비변상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①----- ----- ----- 심의하거나 자문 등에 응하기 위하여 양주군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②심의회 ----- ----- -----</p>
<p>제13조(조직) ①위원회는 군수가 위촉 한 9인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공무원 3 인과 군의회의원 3인 및 학계 등 전문 성을 가진 3인 이내로 구성한다.</p>	<p>제13조(조직) ①심의회는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되 7인의 위원으 로 구성하고 당연직위원은 집행기관의 소속직원중에서 3인을 군수가 임명하</p>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고 위촉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군수가 위촉한다.
②(생략)	1.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2인
③ 위원회 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각 1인을 두며 위원회에서 서로 뽑는다.	2. 학계등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 2인 ②(현행과 같음)
④(생략)	③ 심의회 ----- ----- 군수가 지명 또는 위촉한다.
⑤ 위원회 소집시는 관계부서 책임 공무원을 출석케 하여 충분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④(현행과 같음) ⑤ 심의회 ----- ----- -----.
⑥ 위원회 는 2/3이상 출석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u>의결한다.</u> 제14조(대외 누설금지) <u>위원회</u> 위원은 회의과정 및 직무수행상 안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그 직책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⑥ 심의회 ----- ----- <u>심의한다.</u> 제14조(대외 누설금지) <u>심의회</u> ----- ----- ----- -----.
〈신 설〉	제14조의 2(즉시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절차) ①“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5조(정보공개목록의 작성) ①집행기관은 청구인의 편의를 위하여 즉시 처리할 수 있는 정보공개 목록을 작성하여 소정의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 열람에 제공한다.</p> <p>②(생략)</p> <p>〈 신 설 〉</p>	<p>1. 일반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p> <p>2. 이미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시간이 걸리지 아니하는 정보</p> <p>3. 기타 집행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②제1항의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는 정보공개청구서에 의하여 접수하되, 신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p> <p>제15조(정보공개목록의 작성) ①집행기관은 청구인의 편의를 위하여 공개대상 목록책자를 발간하여 군 및 읍·면 민원실등에 비치하여야 한다.</p> <p>②(현행과 같음)</p> <p>제19조(준용)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을 준용 한다.</p>

●公共機關의情報公開에관한法律

소관부처 : 총무처

制定 1995. 12. 31 法律第5242號

〔시행일 : 1998년 1월 1일〕

第1章 總 則

第1條 (目的) 이 法은 公共機關이 보유·관리하는 情報의 公開義務 및 國民의 情報公開請求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國民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國政에 대한 國民의 참여와 國政運營의 透明性을 확보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情報”라 함은 公共機關이 職務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文書·圖面·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媒體등에 記錄된 사항을 말한다.
2. “公開”라 함은 公共機關이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情報를 閲覽하게 하거나 그 習本 또는 複製物을 교부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公共機關”이라 함은 國家, 地方自治團體, 政府投資機關管理基本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政府投資機關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機關을 말한다.

第3條 (情報公開의 원칙) 公共機關이 보유·관리하는 情報는 이 法이 정하는 바에 따라 公開하여야 한다.

第4條 (적용범위) ①情報의 公開에 관하여는 다른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地方自治團體는 그 所管事務에 관하여 法令의 범위안에서 情報公開에 관한 條例를 정할 수 있다.

③國家安全保障에 관련되는 情報 및 保安業務를 管掌하는 機關에서 國家安全保障과 관련된 情報分析을 目的으로 積集되거나 작성된 情報에 대하여는 이 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第5條 (公共機關의義務) ①公共機關은 情報의 公開를 請求하는 國民의 權利가

第4編 行政一般 第2章 行政作用一般 公共機關의情報公開에 관한法律

존중될 수 있도록 이 法을 운영하고 소관 관련法을 整備하여야 한다.

②公共機關은 情報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檢索이 이루어지도록 情報管理體系를 整備하여야 한다.

第2章 情報公開請求權者 및 非公開對象情報

第6條 (情報公開請求權者) ①모든 國民은 情報의 公開를 請求할 權利를 가진다.

②外國人의 情報公開請求에 관하여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7條 (非公開對象情報) ①公共機關은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情報에 대하여는 이를 公開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法律 또는 法律에 의한 命令에 의하여 秘密로 유지되거나 非公開事項으로 規定된 情報
2. 公開될 경우 國家安全保障·國防·統一·外交關係등 國家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情報
3. 公開될 경우 國民의 生命·身體 및 財產의 보호 기타 公共의 安全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情報
4. 진행중인 裁判에 관련된 情報와 犯罪의豫防, 搜查, 公訴의 제기 및 유지, 刑의執行, 纠正, 保安處分에 관한 사항으로서 公開될 경우 그 職務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刑事被告人の 공정한裁判을 받을 權利를 침해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情報
5. 監査·監督·檢査·試驗·規制·入札契約·技術開發·人事管理·意思決定過程 또는 內部檢討過程에 있는 사항으로서 公開될 경우 業務의 공정한 수행이나 研究·開發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情報
6. 당해 情報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住民登録番號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識別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情報.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情報를 제외한다.
 - 가. 法令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閲覽할 수 있는 情報
 - 나. 公共機關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情報로서 公表를 目的으로 하는 情報
 - 다. 公共機關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情報로서 公開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權利敎濟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情報

第4編 行政一般 第2章 行政作用一般 公共機關의 情報公開에 관한法律

7. 法人·團體 또는 개인의 藥業상 秘密에 관한 사항으로서 公開될 경우 法人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情報. 다만, 다음에 열거한 情報를 제외한다.

가. 事業活動에 의하여 발생하는 危害로부터 사람의 生命·身體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公開할 필요가 있는 情報

나. 違法·부당한 事業活動으로부터 國民의 財產 또는 生活을 보호하기 위하여 公開할 필요가 있는 情報

8. 公開될 경우 不動產投機·買占賣惜等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情報

②公共機關은 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情報가 기간의 경과등으로 인하여 非公開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情報를 公開對象으로 하여야 한다.

第3章 情報公開의 節次

第8條 (情報公開의 請求方法) ①情報의 公開를 請求하는 者(이하 “請求人”이라 한다)는 당해 情報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公共機關에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한 情報公開請求書를 제출하여야 한다.

1. 請求人の 이름·住所登録番號 및 住所

2. 公開를 請求하는 情報의 내용 및 사용목적

②情報公開請求의 대상이 이미 널리 알려진 사항이거나 請求量이 過多하여 정상적인 業務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請求된 情報의 習本 또는 複製物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

③第1項 및 第2項에 規定된 사항외에 情報公開의 請求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國會規則·大法院規則·憲法裁判所規則·中央選舉管理委員會規則 및 大統領령으로 정한다.

第9條 (情報公開與否의 決定) ①公共機關은 第8條의 規定에 의하여 情報公開의 請求가 있는 때에는 請求를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公開與否를 決定하여야 한다.

②公共機關은 부득이한 사유로 第1項에 規定된 기간내에 公開與否를 決定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起算하여 15일의 범위내에서 公開與否 決定期間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公共機關은 연장이유를 請求人에게 지

第4編 行政一般 第2章 行政作用一般 公共機關의情報公開에관한法律

체없이 書面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公共機關은 公開對象情報의 전부 또는 일부가 第3者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公開請求된 사실을 第3者에게 자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에 대한 의견을 聽取할 수 있다.

④情報公開를 請求한 날부터 30日이내에 公共機關이 公開與否를 決定하지 아니한 때에는 非公開의 決定이 있는 것으로 본다.

第10條 (情報公開審議會) ①公共機關은 第9條의 規定에 의한 情報公開與否를 審議하기 위하여 情報公開審議會를 設置·운영한다.

②情報公開審議會의 구성·운영 및 機能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國會規則·大法院規則·憲法裁判所規則·中央選舉管理委員會規則 및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1條 (情報公開與否決定의 통지) ①公共機關은 第9條의 規定에 의하여 情報의 公開를 決定한 때에는 公開日時·公開場所등을 명시하여 請求人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公共機關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情報를 公開함에 있어 당해 情報의 原本이 汚損 또는 破損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情報의 築本등을 公開할 수 있다.

③公共機關은 第9條의 規定에 의하여 情報의 非公開決定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請求人에게 자체없이 書面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非公開事由·불복 방법 및 不服節次를 명시하여야 한다.

第12條 (部分公開) 公開請求한 情報가 第7條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부분과 公開가 가능한 부분이 混合되어 있는 경우에는 公開請求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별위안에서 두 부분을 分離할 수 있는 때에는 第7條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公開하여야 한다.

第13條 (즉시처리가 가능한 情報의 公開節次) 즉시 또는 口述處理가 가능한 情報의 公開節次등에 관하여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4條 (請求人の義務) 請求人は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취득한 情報를 請求한 目的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第15條 (費用負擔) ①情報의 公開 및 郵送등에 소요되는 費用은 實費의 범위안에서 請求人의 부담으로 한다.

②公開를 請求하는 情報의 使用目的이 公共福利의 유지·增進을 위하여 필요하

第4編 行政一般 第2章 行政作用一般 公共機關의情報公開에 관한法律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費用을 減免할 수 있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費用 및 徵收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國會規則·大法院規則·憲法裁判所規則·中央選舉管理委員會規則 및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4章 不服救濟節次

第16條 (異議申請) ①請求인이 情報公開와 관련하여 公共機關의 처분 또는 不作為로 인하여 法律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公共機關으로부터 情報公開與否의 決定通知를 받은 날 또는 第9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非公開의 決定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에 당해 公共機關에 書面으로 异議申請을 할 수 있다.

②公共機關은 异議申請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그 异議申請에 대하여 決定하고 그 결과를 請求人에게 지체없이 書面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公共機關은 异議申請을 却下 또는 棄却하는 決定을 한 때에는 請求人에게 行政審判 또는 行政訴訟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第2項의 規定에 의한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第17條 (行政審判) ①請求인이 情報公開와 관련하여 公共機關의 처분 또는 不作為로 인하여 法律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行政審判法이 정하는 바에 따라 行政審判을 請求할 수 있다. 이 경우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公共機關의 처분 또는 不作為에 대한 裁決廳은 관계中行政機關의 長으로 한다.

②請求인은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异議申請節次를 거치지 아니하고 行政審判을 請求할 수 있다.

③行政審判委員會의 委員중 情報公開與否決定에 관한 行政審判에 관여하는 委員은 在職중은 물론 退職후에도 그 職務상 알게 된 秘密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④第3項의 委員에 대하여는 刑法 기타 法律의 罰則適用에 있어서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

第18條 (行政訴訟) ①請求인이 情報公開와 관련하여 公共機關의 처분 또는 不作為로 인하여 法律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行政訴訟法이 정하는 바에 따라 行政訴訟을 제기할 수 있다.

②裁判長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傷害者를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제출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소관부처 : 총무처

제정 1997. 10. 21 대통령령 제15498호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영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공공기관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기관을 말한다.

1. 교육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2.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3. 공무원연금법 제47조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연금의 지급정지 대상기관

제 2 장 외국인의 정보공개청구

제 3 조 (외국인의 정보공개청구)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외국인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2.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제 3 장 정보공개의 절차

제 4 조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 또는 컴퓨터통신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 5 조 (다수인의 정보공개청구) 2인이상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 6 조 (접수증의 교부)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공개처

第4編 行政一般 第2章 行政作用一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부를 명시하여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시행전에 이관받아 통일원·외무부 또는 정부기록보존소에 보존중인 문서의 공개여부는 문서보존기관의 장이 결정한다.

제11조 (관계기관 및 부서간의 협조) ①정보공개청구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는 관계기관 또는 다른 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때에는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후 지체없이 처리기간의 범위내에서 회신기간을 명시하여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 또는 부서는 그 회신기간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제12조 (정보공개심의회) ①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과 제 2 조 각호의 기관은 기관의 업무성격이나 업무량등을 고려하여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1개이상 당해 기관 또는 소속기관에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기관에 심의회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등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회등으로 하여금 심의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공기관의 장이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6조 및 법 제19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3.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③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심의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공공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중에서 지명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자 또는 외부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⑤심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자 또는 외부전문가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가 설치된 공공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13조 (정보공개일시의 통지등) ①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자

第4編 行政一般 第2章 行政作用一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할 때에는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기타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청구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외국인등록증 기타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청구인이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외국단체등록증 기타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 또는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2.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기타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3.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할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증 기타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제17조 (정보공개처리상황의 기록)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상황을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8조 (비용부담)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공개 및 우송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인화물 또는 출력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구분하되 수수료의 금액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 수수료의 금액은 조례로 정한다.

②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으며, 수수료에 한한다.

1. 비영리의 학술·공익 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
3.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감면비율은 공공기관의 장이 정한다.

④수수료는 정부기관에는 수입인지로, 지방자치단체에는 수입증지로,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공공기관에는 현금으로 각각 납부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관부처 : 총무처

제정 1997. 11. 11. 총리령 제659호

제 1 조 (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보공개청구서의 서식) 법 제8조제1항 및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 3 조 (정보공개처리관련 서식) ①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여부 결정기간 연장의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6조 및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처리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 4 조 (제3자의 의견청취관련 서식) ①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가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의 의견제출 또는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요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9조제3항 및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로 제3자의 의견청취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 5 조 (정보공개여부 결정통지의 서식) 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여부 결정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제 6 조 (정보공개 위임장 서식) 영 제16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임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 7 조 (수수료의 금액) 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금액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와 같다.

제 8 조 (이의신청의 서식) 법 제16조제1항 및 법 제19조제2항과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제 9 조 (자료제출의 서식)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운영실태의 제출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